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4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세종지방법원 설치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세종지방법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	4
다. 검토의견	10
라. 관계기관 의견	13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27인

2. 제 안 일 : 2024. 6. 5.

3.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년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III. 검토의견

1. 세종지방법원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2]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을 폐지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즉,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을 세종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면서, 이에 따라 현행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세종지방법원 설치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폐지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세종지방법원 관할구역 규정 ·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조정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폐지

- 개정안에 따라 폐지되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과 신설되는 세종지방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로 규정됨.

<폐지·신설되는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구분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폐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026년 3월 1일
신설	세종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나. 세종지방법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¹⁾

1) 관할인구

- 개정안에 따른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라 2023년 12월말 기준 대전지방법원 본원, 세종지방법원 및 금산군법원의 관할인구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신설되는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인구는 38만 6,525명으로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 전체 관할인구(187만 8,834명)의 약 20.6%에 해당함.

<개정안에 따른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인구>

2023. 12. 기준

법원	관할구역	관할면적	인구(총1,878,834명)	
			인구수(명)	비율
대전지방법원 본원	대전광역시	540km ²	1,442,216	76.%
세종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	465km ²	386,525	20.6%
금산군법원	금산군	579km ²	50,093	2.7%
합계		1,584km ²	1,878,834	100%

- 신설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인구(38만 6,525명)는 현재 다른 18개 지방법원과 비교하면 작은 편임. 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할인구가 가장 작은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인구는 42만 9,8718명이고, 그 다음으로 작은 제주지방법원의 관할인구는 67만 5,252명임.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최근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고, 장래인구

1)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추계에 따르면, 2029년 이후에는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인구인 43만 여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법원별 관할인구 비교>

(2023. 12. 31. 기준)

순위	법원명	인구 수	순위	법원명	인구 수
1	수원지방법원	3,446,821	10	울산지방법원	1,458,783
2	인천지방법원	2,997,4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	1,349,849
3	서울북부지방법원	2,242,180	12	부산지방법원	1,284,638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73,991	13	창원지방법원	1,183,485
5	서울남부지방법원	1,993,766	14	의정부지방법원	1,047,220
6	대구지방법원	1,916,333	15	청주지방법원	1,043,527
7	대전지방법원	1,878,834	16	전주지방법원	895,656
8	광주지방법원	1,764,439	17	제주지방법원	675,252
9	서울동부지방법원	1,726,248	18	춘천지방법원	429,818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인구 증가추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할인구	243,048	280,100	314,126	340,575	355,831	371,895	383,591	386,525
증가율	-	15.24%	12.15%	8.42%	4.48%	4.5%	3.1%	0.76%
증가율 (전국)	-	0.16%	0.09%	0.05%	-0.04%	-0.37%	-0.39%	-0.22%

<세종특별자치시 장래인구추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예상 인구수 (외국인 포함)	389,166	397,631	406,801	414,481	421,945	429,183	436,186
예상 인구수 (주민등록기준) ^{가)}	383,329	391,667	400,699	408,264	415,616	422,745	429,643
구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예상 인구수 (외국인 포함)	442,943	449,440	455,673	461,641	467,352	472,836	478,109
예상 인구수 (주민등록기준)	436,299	442,698	448,838	454,716	460,342	465,743	470,937

출처: 통계청(지역통계기획팀), 세종특별자치시 장래인구추계

2) 예상 사건 수

-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관할구역: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건은 신설 세종지방법원에서 처리될 것임. 인구비율(신설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인구는 기존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의 약 20.6%)에 따라 사건 수를 추정해 보면, 세종지방법원 사건 수는 약 3,195건으로 예측됨.

<신설 세종지방법원 사건 수 추정>

2023. 12. 기준

구 분		민사사건		형사공판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현행	대전지방법원	742	7,672	635	6,472	15,521
세종지법 설치시	대전지방법원	590	6,092	505	5,139	12,326
	세종지방법원	152	1,580	130	1,333	3,195

<지방법원별 사건 수 비교>

(2023. 12. 31. 기준)

순위	법원명	사건 수	순위	법원명	사건 수
1	서울중앙지방법원	72,741	10	대구지방법원	15,582
2	인천지방법원	27,580	11	대전지방법원	15,521
3	수원지방법원	25,339	12	울산지방법원	11,493
4	서울남부지방법원	21,752	13	의정부지방법원	9,809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0	14	청주지방법원	8,455
6	광주지방법원	17,080	15	창원지방법원	8,444
7	서울북부지방법원	16,067	16	전주지방법원	7,999
8	서울동부지방법원	15,841	17	제주지방법원	7,123
9	부산지방법원	15,627	18	춘천지방법원	3,112

* 사건 수: 1심 본안사건 수 = 민사(합의, 단독) + 형사(합의, 단독)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 신설 세종지방법원의 사건 수(3,195건)는 다른 18개 지방법원과 비교하면 작은 편임. 다만,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건 수가 가장 작은 춘천지방법원(3,112건)보다는 사건 수가 큰 것으로 나타남.

3) 사법 접근성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종지방법원 예정부지에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된다면, 세종특별자치시 각 거점지역(조치원읍, 금남면, 도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비해 세종지방법원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이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나,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권역에서 사법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예를 들어, 조치원읍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는 거리로는 38킬로미터이고, 자동차로는 48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34분이 소요되나, 세종지방법원까지는 거리로는 22킬로미터이고, 자동차로는 27분, 대중교통으로는 54분이 소요됨.

도담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가 거리로는 25킬로미터이고, 자동차로는 38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10분이 소요되나, 세종지방법원까지는 거리로는 5.9킬로미터이고, 자동차로는 11분, 대중교통으로는 3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세종특별자치시 각 거점지역에서의 사법접근성 비교>

출발지	인구	각 행정복지센터 ↔ 대전지방법원			각 행정복지센터 ↔ 세종지방법원		
		거리(km)	시간(분)		거리(km)	시간(분)	
			자동차	대중교통		자동차	대중교통
조치원읍	51,747명 (13.4%)	38	48분	1시간34분	22	27분	54분
금남면	30,415명 (7.9%)	18	27분	54분	4.8	9분	28분
도담동	304,363명 (78.7%)	25	38분	1시간10분	5.9	11분	32분

4) 대전지방법원 관할인구 및 사건 수

- 세종지방법원 신설로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외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는 187만 8,834명에서 149만 2,309명으로 감소함.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는 18개 지방법원 중 7위에서 9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비율(신설 세종지방법원 관할인구는 기존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의 20.6%)에 근거하여 추정한 신설 세종지방법원의 연간 사건 수는 3,195건임.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는 종전 1만 5,521건에서 1만 2,326건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어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가 감소하더라도,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18개 지방법원 중 순위는 11위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대전지방법원 관할인구 및 사건 수 변화>

순위	법원	관할인구
1	수원지방법원	3,446,821
2	인천지방법원	2,997,410
3	서울북부지방법원	2,242,180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73,991
5	서울남부지방법원	1,993,766
6	대구지방법원	1,916,333
7	대전지방법원(현재)	1,878,834
7	광주지방법원	1,764,439
8	서울동부지방법원	1,726,248
9	대전지방법원(세종지법 설치 후)	1,492,309
10	울산지방법원	1,458,78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1,349,849
12	부산지방법원	1,284,638
13	창원지방법원	1,183,485
14	의정부지방법원	1,047,220
15	청주지방법원	1,043,527
16	전주지방법원	895,656
17	제주지방법원	675,252
18	춘천지방법원	429,818
19	세종지방법원	386,525

순 위	법 원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1	서울중앙지방법원	6,638	55,102	1,228	9,773	72,741
2	인천지방법원	971	12,834	1,178	12,597	27,580
3	수원지방법원	1,554	12,422	955	10,408	25,339
4	서울남부지방법원	1,218	12,872	577	7,085	21,752
5	서울서부지방법원	832	14,266	405	4,527	20,030
6	광주지방법원	857	8,278	762	7,183	17,080
7	서울북부지방법원	530	8,153	555	6,829	16,067
8	서울동부지방법원	1,026	9,178	424	5,213	15,841
9	부산지방법원	722	7,436	745	6,724	15,627
10	대구지방법원	780	7,343	690	6,769	15,582
11	대전지방법원(현재)	742	7,672	635	6,472	15,521
11	대전지방법원(세종지법 설치 후)	590	6,092	505	5,139	12,326
12	울산지방법원	434	4,223	493	6,343	11,493
13	의정부지방법원	401	4,343	436	4,629	9,809
14	청주지방법원	345	3,934	339	3,837	8,455
15	창원지방법원	398	3,741	360	3,945	8,444
16	전주지방법원	289	4,362	286	3,062	7,999
17	제주지방법원	304	3,107	366	3,346	7,123
18	세종지방법원	152	1,580	130	1,333	3,195
19	춘천지방법원	172	1,218	167	1,555	3,112

다.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임. 세종특별자치시에 시법원이 있으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제1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33조(시·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 개정안은 대전지방법원 관내에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을 폐지하고, 대전고등법원 관내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① 신설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과 개선의 정도, ③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나 사건 수에 미치는 영향, ④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 ⑤ 지원 또는 지

방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⑥ 신규 법원 신설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종지방법원이 신설되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거의 모든 권역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신설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인구 및 예상 사건 수 규모는 18개 지방법원 중에서 가장 낮은 춘천지방법원과 유사하여 높지 않은 편임.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을 폐지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던 협의이혼사건 등의 관할이 대전자정법원으로 변경되는 효과²⁾를 낳고 있는데, 이 경우 협의이혼사건 등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세종지방법원 신설 이전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같이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소년보호사건은 대전자정법원이 그대로 관할하게 하고, 소년보호

2)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자정법원의 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 세종지방법원이 신설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사무 중 대전지방법원 소관 사무는 세종지방법원으로 이관되지만, 대전자정법원 소관 사무는 대전자정법원 소관으로 남게 됨.

사건을 제외한 가사·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사건 등은 세종지방법원이 관할하게 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임. 이 경우,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대전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2026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사 신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조금 더 유예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제21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5. 7.)는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의안번호 제2109202호,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한 후,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되, 시행일은 2031년 3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던 바 있음³⁾.

-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773억 3,000만원(연평균 154억 6,600만원)으로 추정됨. 이에는 세종지방법원 신설에 따른 비용(청사 신축비, 공무원 인건비 등)과 「검찰청법」 제3조제1항⁴⁾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세종지방검찰청 신설에 따른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참조).

3) 다만,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해, 임기만료폐기되었음.

4)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라.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에 입법정책 사항이나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에 부합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시법원만으로는 향후 증가될 사법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에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가능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위상을 고려할 때 세종지방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나,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 관할인구(약 39만명)가 전국 지방법원 중 최소규모인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인구(약 43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가 훨씬 크지만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천안시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청사 신축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안의 시행일(2026년 3월 1일)은 합리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대전가정법원이 계속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사사건 등을 관할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가사사건 등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접근성, 가사사건 등에 대한 대전가정법원의 전문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하되, 나머지 가사·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사건 등은 세종지방법원이 관할하게 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93억 3,700만원, 2029년 60억 6,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773억 3,000만원(연평균 154억 6,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연평균
세종지방법원 설치 (안 [별표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등)	29,337	30,154	5,830	5,947	6,062	77,330	15,466

주: 1. 세종지방법원 설치(안 [별표1] 및 [별표3])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세종지방법원이 신설되면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세종지방검찰청도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유사사례인 제주지방법원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6년의 보수, 기관 부담금,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는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세종지방법원이 신설되면,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세종지방검찰청도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경비, 각각 32명과 42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과 청사 입주 전까지의 사무실 임차료

○ 토지매입비는 각 기관별로 28억 4,200만원으로 총 56억 8,400만원

○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와 부대경비는 2025년 236억 5,300만원, 2026년 248억 3,400만원으로 추정

-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지방검찰청이 설치되는 경우 판사 및 검사가 각각 증원될 수 있으나, 판·검사의 증원여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신축 면적 산정과 증원 대상에서 제외